

## CONTACT



변호사 김성민

T: 02.772.4979  
E: [sungmin.kim@leeko.com](mailto:sungmin.kim@leeko.com)

변호사 홍형근

T: 02.6386.6619  
E: [hyounggeun.hong@leeko.com](mailto:hyounggeun.hong@leeko.com)

변호사 김서현

T: 02.772.4677  
E: [seohyun.kim@leeko.com](mailto:seohyun.kim@leeko.com)**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수주주와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산정된 ‘확정가액’을 의미 -**

2011년 개정 상법에 의해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Squeeze-out)는,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수주주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매매가액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배주주는 소수주주 보유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매매가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때 ‘매매가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본 제도가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매매가액’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본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매매가액’ 의미에 관한 해석 및 실무상 난점**

상법상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는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의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회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법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와 협의한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소수주주 소유 주식은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상대적 불확지) 소수주주가 매매가액의 수령을 거부하여 매매가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26).

이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을 그대로 공탁하면 족한 것인지(제시가액설)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매매가액에 대한 결정을 받아 확정된 매매가액으로 공탁하여야 하는 것인지(확정가액설)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14년 확정가액설의 입장에서 법원이 결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해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상사법무과-83(2014. 1. 8.)),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경우 법원에서 매매가액이 확정되기까지 수 년 동안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학계 및 실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제시가액설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음을 이유로 공탁소 등에서 공탁 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 2. '매매가액'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산정된 '확정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

대상판결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동일한 확정가액설의 입장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 제360조의24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그 논거로 (i)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수주주가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 지급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ii) 상법이 ‘소수주주가 매도청구권의 통지를 수령한 때’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주식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소수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상법 제360조의25)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며, (iii) 위 공탁에 관한 규정(상법 제360조의26)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360조의25)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매매가액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시 내용에 따라, 대상판결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 의한 매매가액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하였던 사안에서, 소수주주 보유 주식이 지배주주에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수주주가 여전히 회사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종래 실무상 가장 논란이 되었던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명확하게 확정가액설을 지지함에 따라, 향후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의 활용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배주주가 임의로 산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한 경우 소수주주 보유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배주주로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또는 매매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수주주 보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배주주로서는, 소수주주와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의 기업자문 그룹은 다수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실행 경험을 통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우 04532) | Tel: 02-772-4000 | Fax: 02-772-4001/2 | [www.leeko.com](http://www.leeko.com)

[뉴스레터 더 보기](#)

[COVID-19 자료실](#)